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혁 신 도 시 조 성 및 발 전 에 관 한
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000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1. 의결주문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수립·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(법률 제17614호, 2020.12.8. 공포)되었으며, 개정 법률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정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통보”를 “통보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 받은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”로 한다.

제31조의3제2항 중 “법 제29조의5제2항”을 “법 제29조의5제3항”으로, “통보”를 “통보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)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 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<u>통보</u> 하여야 한다.	제31조(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보</u> 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<u>통보받은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</u> <u>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</u> <u>홈페이지에 공개</u> -----
제31조의3(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) ① (생 략)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<u>법 제29조</u> <u>의5제2항</u> 에 따른 구매계획과 전년 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<u>통보</u> 하여야 한다.	제31조의3(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법 제29조</u> <u>의5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<u>통보</u> <u>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</u> <u>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</u> <u>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</u> <u>홈페이지에 공개</u> 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혁신도시대외협력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494